

보통우편

2021년 1월 15일

### TCHC 세입자 여러분,

여러분의 소득을 기준으로 저희가 집세를 계산하는 방식(이른바 ‘소득별임대료’ 또는 RGI)이 2021년 7월 1일부터 변경되는 것에 관한 이 안내문과 아울러 자료표와 토론토시의 통지를 동봉합니다.

이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필요할 경우, 세입자서비스 코디네이터 (Tenant Services Coordinator) 또는 고객관리센터(Client Care Centre)에 문의하십시오(이메일 [help@torontohousing.ca](mailto:help@torontohousing.ca), 전화 **416-981-5500**).

### 변경 사항

온타리오주 정부는 주거서비스법(Housing Services Act, 2011) 하의 규정을 변경하였고, 이에 따라 여러분의 집세 계산 방식이 더 단순해집니다.

2021년 7월 1일부터는 최근 사정고지서(Notice of Assessment)에 명시된, 조정된 가구순소득을 기준으로 집세가 계산됩니다. ‘사정고지서’는 캐나다국세청(CRA)이 여러분의 소득세신고서를 검토 및 확인한 후 여러분에게 발송하는 문서입니다.

### 변경 이유

이 변경은 집세 계산 방식을 이해하기 쉽게 만들기 위한 것이며, 연례 집세 검토시 여러분이 제출해야 할 서류의 양을 크게 줄여줄 수 있습니다. 또한, 대부분의 경우, 지난해에 발생한 소득 변화를 신고할 필요도 없습니다.

### 변경 시기

이 변경은 2021년 7월 1일 토론토에서 발효합니다.

## 여러분이 해야 할 일

1. CRA가 정한 기한인 2021년 4월 30일까지 2020년도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십시오.
2. 다음번 연례 집세 검토시 2020년도 사정고지서(NOA) 사본을 TCHC에 제출하십시오.

## 이것이 중요한 이유

사정고지서를 제출하지 않으면 여러분에게 지급되는 보조금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.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저희가 도와드리겠습니다. 도움이 필요하면 알려주십시오.

## 소득세신고서 작성과 관련하여 도움 받기

이 안내문에 동봉된 자료표에 소득세 신고와 관련하여 도움을 받는 방법이 설명되어 있습니다. 캐나다국세청(CRA)은 지역사회 자원봉사자 소득세 프로그램(Community Volunteer Income Tax Program)을 통하여 적격자들을 위한 무료 세금 클리닉을 엽니다.

## 소득세 신고에 따르는 기타 혜택

해마다 빠짐없이 소득세신고서를 제출하면 여러 가지 세액공제 및 세금 혜택을 누릴 자격이 생길 수 있습니다. 이러한 세액공제는 납부할 세금을 줄여줄 수 있으며, 납부할 세금이 없을 경우에도 지급됩니다. 자료표에는 소득세 신고에 따르는 각종 세액공제가 설명되어 있습니다.

추가적 정보나 도움이 필요할 경우, 세입자서비스 코디네이터 또는 고객관리센터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.

감사합니다.



Sheila Penny  
Chief Operating Officer